

제22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 
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)

2021. 6. 1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9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# 2. 제안이유

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(2020. 11. 17 개정)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부회장 확대, 감사 신설,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(안 제4조)
  - 1) 부회장 확대(복수의 부회장), 감사 신설
  - 2)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
- 나.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 규정 마련(안 제5조)
  - 1)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
- 다.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(안 제11조)

- 1) 실무협의회는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
- 2) 실무협의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 처리
- 3) 실무검토 의견서를 전체 회원도시에 공유

#### 라. 경비부담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(안 제12조)

- 1)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,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
- 2) 납부된 분담금은 공동사업 추진 필요경비로 사용
  - 총회,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  - 포럼,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
  -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
  -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
  -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
  -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

#### 마.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(안 제13조)

- 1)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 보고 및 승인
- 2)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 실시,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

#### 바. 운영세칙 조항 정비(안 제15조)

- 1)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

#### 사. 별지 서식 추가(가입신청서 및 위임장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회의회의 구성) 및 제158조(협회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)

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안이유와 관련근거

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<sup>1)</sup>에 따라 2018. 3. 31.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에서 2020. 11. 17.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, 지방자치법 제158조<sup>2)</sup>에 따라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에 ‘지방의회 동의절차 이행 협조 요청’을 하였기에 2021. 5. 28. 금천구청장이 운영규약 개정안을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였음.

### 나. 검토결과 : 운영규약 개정의 필요성, 타당성이 인정됨

- 개정된 규약은 부회장 확대, 감사 신설,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 규정 마련 등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, 규약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.

---

1) 제152조(행정협회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  
2) 제158조(협회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- 또한 지방자치법 제154조(협의회 의 규약)<sup>3)</sup>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.
- 아울러 본 협의회는 붙임 2.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회로서, 협업을 통한 교육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교육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붙임 1. 관련 법령 1부.

2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일반현황 및 회원 지방자치단체 현황 1부.

3) 제154조(협의회 의 규약) 협의회 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협의회 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협의회 를 구성 하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|
| 3. 협의회 가 처리 하는 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협의회 의 조직 과 회장 및 위원 의 선임 방법 |
| 5. 협의회 의 운영 과 사무 처리 에 필요 한 경비 의 부담 이나 지출 방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그 밖에 협의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**제152조(행정협회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154조(협의회의의 규약)** 협의회의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58조(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**1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**

- 1. 협의회명 :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
- 2. 설립목적 :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
- 3. 설립근거 : 지방자치법 152조
- 4. 설립일 : 2018. 3. 31.
- 5. 회원도시 : 63개 지방정부
- 6. 운영체계 :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5명, 사무총장 1명, 감사 1명

직 위	자치단체명	단체장명	가입년월일	비고
회 장	경기 오산시	곽상욱	2018.03	2020.상반기 정기총회 시 선출 (2020.7.16.)
수석부회장	서울 송파구	박성수	2018.10	
부 회 장	서울 은평구	김미경	2018.03	제3기 사무총장
	경기 시흥시	임병택	2018.03	제3기 부회장
	충남 당진시	김홍장	2018.03	
	전남 순천시	허 석	2018.09	
	강원 홍천군	허필홍	2018.10	
사 무 총 장	부산 연제구	이성문	2019.12	
감 사	충남 공주시	김정섭	2018.10	

- 7. 분 담 금 : 5,000천원(연 1회)

## 8. 주요사업

-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
-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
- 지방정부 간, 일반자치(지방정부)와 교육자치(교육청)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

## 9. 운영방향

- 일반자치(지자체)와 교육자치(교육청)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
-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
- 중앙(교육부)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
- 지방정부 단위에서 각자 추진하던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계와도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의 창 역할 수행

## 10. 주요 사업

-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
  -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
  -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추구
-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
  -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, 아동·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, 세대 간·지역 간 연대 방안 모색
  -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
- 지방정부 간, 일반자치(지방정부)와 교육자치(교육청)간 교육 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
  -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
  -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 공유
  - 지방정부의 성공과 좌절의 경험을 모아, 공유된 지혜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

## 2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

□ 회원도시 현황: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

(2021년 3월 30일 현재)

지 역	지 방 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	24
부 산	북구, 연제구, 금정구	3
인 천	미추홀구	1
광 주	-	0
대 전	유성구, 대덕구	2
울 산	중구	1
경 기	수원시, 고양시, 용인시, 성남시, 화성시, 안산시, 안양시, 시흥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김포시, 광주시, 광명시, 오산시, 이천시, 구리시, 안성시, 여주시, 동두천시	19
강 원	홍천군, 양구군	2
충 북	보은군	1
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, 서천군	4
전 남	여수시, 순천시, 곡성군, 구례군, 영암군, 완도군	6

※ 2021년도 신규가입 : 대전 유성구, 이천시, 성남시, 용인시, 완도군, 양구군, 경기 광주시  
2021년도 탈퇴 : 광주 서구